

(전자등록)기준일 통보문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문서번호

2020년 09월 02일

수 신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참 조 증권대행팀장 (담당자 : 이병진님)
제 목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및 폐쇄기간 등 통보

우리 회사 정관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과 명부폐쇄기간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1. 결산기준일 : 2020. 09. 17
2. 주주명부폐쇄기간 : -

붙 임 회사정관 기준일 및 폐쇄기간 해당조항 사본 1부. 끝.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대표이사 김태현



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20조(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1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 1항과 제 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